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마목, 제86조제4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과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7-1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우편요금 감액대상

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로 연간 3회의 범위 안에서 1회에 5,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2. 우편요금 감액요건

가.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1)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집중국

3) 2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선거구에서의 의정활동보고서 발송시 복합선거구내 소재 4급 또는 5급우체국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접수우체국별로 각각 연간 3회 범위 내에서 접수가 가

능하다.

나. 우편물 제출 방법

1) 우편번호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1묶음은 100통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20cm를 초과할 수 없다.

3) 각 묶음에는 행선지역의 우편번호와 우편물 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끼워야 한다.

4) 우편물을 제출 시에는 우편물의 종류·우편물 수량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번호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은 올바른 우편번호(집배원별 우편번호) 사용을 의미함

※ 올바른 우편번호(집배원별 우편번호)란 주소에 맞는 우편번호를 찾을 때, 우정사업본부가 고시하는 우편번호에서 다량배달처(아파트·빌딩·기관·회사), 번지, 리 단위 및 행정동 또는 법정동 순서로 찾아 가장 먼저 해당하는 우편번호이며, 대표동 우편번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우편요금 감액범위(감액률)

가. 기본감액률 : 일반 우편요금의 67%

##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7-19호는 폐지한다.